

인천광역시 노란우산 가입(희망)장려금 지원 신청서

□ 지방자치단체(시행기관)명 : 인천광역시

본인은 노란우산 가입(희망)장려금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귀회에 동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며, 장려금을 지원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계 약 자 명		생 년 월 일	
사 업 체 명		사업자등록번호	
사업장 주소		사업개시일	
연 매 출 액	원	상시근로자 수	명

* 인천시 장려금 수급자는 장려금 지원기간 중 임의해약 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

○ 사업장 이전 시 통지 의무사항 확인

장려금은 지원사업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원되므로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이 중단됩니다. 따라서 장려금 수급자는 사업장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장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하며, 동 기간 내 사업장 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장려금 수령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이전 사실(필요시 사업장 이전일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20 년 월 일

위 본인 : _____ (인)

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

<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주요내용 >

- 지원대상 :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중 '20.6.26 이후 예산소진으로 희망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한함'
 - 신청기한 : '20.7.28(화) ~ '20.8.31(월)
 - *'20.8.31(월)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완료한 가입자만 지원
 - **예산이 조기소진되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
 - 신청방법 : 가입(희망)장려금 신청서 및 '19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
 - *단, 신규창업자의 경우, '20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가능
 - 매출액 증빙서류 : 직전연도 혹은 최근 1년(신규창업시 당해연도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재무제표
 - 대체가능서류 : 사업자등록증(간이과세자), 면세수입금액증명원(면세사업자),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무등록소상공인), 주택임대차계약서(신규 주택임대사업자)
 - 지원방법 :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일정액을 장려금으로 적립
 -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부금납입 시부터 적립되며, 부금 미납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1년 내 미납해소 시에만 지원
 - 지원기간 :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
 - 유의사항 :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,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으며,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발생일 이전까지만 지원
 - ① 지원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가 아닌 타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
 - ② 지원기간 중 폐업·사망·퇴임 등 공제금지급(간주해약 포함)사유가 발생한 경우
- * 인천시 장려금 수급자는 장려금 지원기간 중 임의해약 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

*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정책,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